

# 도핑검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도핑검사규정(이하 “본 규정”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스포츠의 근본적 가치를 보전하고, 수중스포츠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해 도핑검사정책의 추진 및 도핑검사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법률) ① 본 협회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직접 적용하거나, 정관, 경기규칙 등에 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수중스포츠경기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기규칙으로 간주된다.

② 본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규정과 세계반도핑기구의 세계반도핑규약 및 국제표준,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③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핑방지규정 위반 및 도핑의 입증, 금지목록, 치료목적사용면책, 시료의 분석, 결과관리, 제재 및 제재절차 등),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세계반도핑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세계반도핑규정과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 등록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그리고 시·도 지부와 전국규모연맹체는 본 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직접 적용하거나, 정관(규약), 경기규칙 등에 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수중스포츠 경기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기규칙으로 간주된다.

② 본 협회 선수 등록 시에 본 규정을 수용하는 것을 등록조건으로 한다.

③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1. 거주지 및 현 위치에 관계없이 본 협회의 모든 등록선수
2. 본 협회의 가입 단체, 클럽, 팀, 협회
3. 본 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클럽, 팀, 협회가 개최, 소집 또는 승인한 시합이나 자격부여활동에 참가하는 자
4. 국내·외 대회조직위원회가 개최, 소집 또는 승인한 시합이나 자격부여활동에 참가하는 자

제5조(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① 선수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규정과 같다.

1. 본 규정에 규정된 모든 도핑검사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지원요원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지원하는 선수에게 적용되는 모든 도핑검사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선수 검사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선수가 도핑방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경기 참가자들은 경기 참가와 동시에 본 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할 것으로 간주된다.

④ 어떠한 선수라도 도핑검사규정의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도핑검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 제2장 용어

제6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 “선수”라 함은, 국제수준(그 정의는 세계수중연맹이 정하는 바와 같다.) 및 국내 수준(그 정의는 본 협회 도핑검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와 같다. 도핑검사위원회의 수중스포츠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세계반도핑 규약을 수용한 가맹기구 또는 그 밖의 체육단체의 관할권에 소속되는 스포츠의 경기자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검사,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세계반도핑규약의 모든 조항은 국제수준 및 국내수준의 모든 경기자에게 적용된다. 도핑검사위원회는 현재 등록선수가 아니고, 향후에도 등록선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레크리에이션 차원의 경기자 또는 마스터즈급 경기자에게도 검사를 시행하고 도핑검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선수지원요원”이라 함은, 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직원, 임원, 의무요원, 의무보좌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3. “시도”라 함은, 의도적으로 도핑검사규정을 위반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의 과정상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에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위반을 범할 시도만으로 도핑검사규정 위반이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4. “도핑검사규정 위반 결과조치”라 함은, 선수나 그 밖의 관계자의 도핑검사규정 위반이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점관리 도핑대상자등록명부에 등록되어 표적검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자격정지”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기간 동안 모든 경기 및 활동에의 참가, 재정지원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5. “도핑관리”라 함은,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 채취 및 관리, 검사실 분석, 치료 목적사용면책, 결과관리, 청문의 모든 단계와 절차 등 검사배분계획 수립에서부터 최종 항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말한다.
6. “경기기간중”이라 함은, 국제경기연맹 또는 관련 반도핑기구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의 시작 12시간 전부터 당해 경기 및 당해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7. “국제수준의 선수”라 함은, 세계수중연맹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수를 말한다.
8. “미성년자”라 함은, 당사자 거주국의 현행법에 명시된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
9. “국내수준의 선수”라 함은, 도핑검사위원회의 수중스포츠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재된 국제수준의 선수 이외의 선수로서 도핑검사위원회가 지정한 선수를 말한다.
10. “사전미통지”라 함은, 선수에게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되고, 선수는 통지 순간부터 시료 제공 시까지 계속 동반되는 도핑관리를 말한다.
11. “경기기간외”라 함은, 경기기간중의 도핑관리를 제외한 모든 도핑관리를 말한다.
12. “참가자”라 함은,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을 말한다.
13. “관계자”라 함은, 자연인이나 단체 또는 그 밖의 주체를 말한다.
14. “수중스포츠 검사대상자등록명부”라 함은, 세계수중연맹 또는 도핑검사위원회의 검사배분계획의 일환으로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 모두를 관장하는 각 세계수중연맹과 도핑검사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작성된 선수명단을 말한다.
15. “표적검사”라 함은, 특정한 시기에 무작위가 아닌 방법으로 특정 선수나 특정 선수집단을 선정하는 검사를 위한 선수의 선정을 말한다.

### 제3장 도핑검사위원회

제7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 협회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거 도핑검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시·도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는 도핑검사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 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3~7인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관 제11조의 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⑥ 본 위원회는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과 권한) ① 본 위원회는 국내 수중스포츠 도핑검사활동의 총괄전담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도핑검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도핑검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도핑검사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4.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집행
5. 도핑검사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6.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의 검사활동 협조
7. 도핑검사규정 위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중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조치
8. 각 도핑사건에 선수지원요원, 기타 관계자의 연루 조사 등 관할권내의 모든 잠재적 도핑검사 규정 위반에 대한 추적조사
9. 기타 도핑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선수위원회 등의 징계기구와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위원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 제4장 도핑검사규정 위반

제11조(도핑검사규정 위반의 정의) 도핑검사규정 위반은 다음 각 호의 1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장(도핑방지규정 위반 및 도핑의 입증)

따른다.

1.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시도
2. 도핑검사규정에서 규정한 형태로 통지를 받은 후 시료채취를 거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료채취에 불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회피하는 경우
3. 검사국제표준에 따라 선언된 검사 불이행 등 경기기간외검사를 위한 선수확보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도핑관리과정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5.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6.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7.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투여 시도 또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 시도와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여타 형태의 연루

제12조(도핑검사규정 위반의 입증의 책임 및 기준) 본 위원회, 선수, 선수지원요원, 참가자, 관계자는 도핑검사규정 위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입증 기준은 제기된 주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본 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도핑검사규정의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이 입증 기준은 단순한 가능성보다 높아야 하며, 입증여부는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제5장 검사

제13조(검사 권한 및 책임) ① 본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세계수중연맹,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 경기대회나 경기에서 도핑검사를 책임지는 반도핑기구의 경기기간중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자격정지기간 중 또는 임시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세계반도핑기구, 세계수중연맹,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가 국적을 가지거나 거주하거나 스포츠단체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회원인 국가의 국가반도핑기구,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사전통지 또는 사전 미통지로 실시하는 경기기간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표적검사가 우선된다.

②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거 검사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본 위원회를 대리하여 시행되는 모든 검사를 감독 할 책임을 진다. 검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유자격자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14조(검사표준) 본 규정에 의한 검사는 검사시행 당시 유효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검사국제표준과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의한다.

- 제15조(경기대회의 검사) 1.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관리 시료채취는 국제경기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체육단체가 주관하고 감독한다. 모든 국내경기대회의 도핑관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주관하고 감독 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한 도핑관리를 위한 검사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2. 국내경기대회의 검사에서 본 위원회는 도핑방지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도핑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대회개최 2주전에 이를 의뢰하고, 미통지 원칙을 준수한다.

3. 위원회는 국내경기대회 도핑 대상자를 중점관리 도핑대상자, 신기록수립자, 특정종목, 특정종별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기기간외 검사) 1. 위원회는 도핑방지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경기기간외 도핑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일 2주전에 이를 의뢰한다.

2. 경기기간외 검사는 위원회에서 검사 일정을 계획하여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기기간외 검사는 본 협회 소재지에서 이루어 진다.

3. 경기기간외 검사의 시행은 대상자의 소집을 위하여 24시간 전까지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4. 대상자의 선정은 수중스포츠 검사대상자등록명부상의 지역, 부별, 성별 등을 바탕으로 선정범위를 지정하고, 범위 전체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표적검사) 1. 위원회는 도핑검사규정 위반자에 대해 표적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도핑검사규정 위반자는 중점관리 도핑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고 수시로 도핑여부를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표적검사는 국제검사표준의 원칙에 따라 사전 미통지 규정을 준수한다.

4. 표적검사는 혈액 또는 소변이 아닌 기타시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5. 표적검사에 따른 비용은 도핑대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중점관리 도핑대상자 소재지정보 요구사항) ① 위원회는 제4장(도핑검사규정 위반)에 따라 중점관리 도핑대상자에게 필요시 소재지정보를 요구하여 선수들에 대한 중점관리 검사대상자 등록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 도핑대상자는 소재지정보를 갱신하여야 하며, 소재지정보에 따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재지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에 의거 정보 제출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제19조(미성년 선수의 검사) 미성년자에 대한 검사는,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진 보호자가 사전 동意的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동意的는, 본 협회 또는 본 위원회의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미성년자가 스포츠에 참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 제6장 개인에 대한 제재

제20조(중점관리 도핑대상자 처분) 도핑검사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중점관리 도핑대상자 처분은 본 위원회에서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도핑검사규정 위반의 유형, 위반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제재를 결정한다.

제21조(자격정지 처분) 도핑검사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제재결정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명확한 입증자료를 받아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유형, 위반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선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제재절차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2015. 1. 16)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제정 시행된다.